

의안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8. 17.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건요지 : 따로붙임
4. 검토의견 : 따로붙임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년 9월 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연정수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09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등)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약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